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13050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3.12.2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2.09. 홈페이지 www.3030eng.com 이메일 info.3030eng.com

[3030영어]

정 보 공 개 서

(주)3030영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3030영어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 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u>가맹거래사</u>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357, B동 8층 808호(청덕동, 용인테크노밸리)

대표전화: 1661-3035 가맹사업부전화: 1661-3035

팩스번호: 070-4193-3058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서류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가맹금 예치 신청서

[별첨2] 별지 제2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현황

[별첨3]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 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 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 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3030영어 외 1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357, B동 8층					
			808호(청덕동, 용인테크노밸리)					
(주)3030영어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다		대표팩스번호	
	2019-07-25		2019-07-25	김동우	1661-3035		070-4178-3035	
	법인등록번호 13		84511-0404670	사업자등록번호		359	9-87-0132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경기도 용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357, B동			
م) وا	カモゥ	3030영어 외	808호(청덕동, 용인테크	노밸리)		
임원	김동우	1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동우	1661-3035	070-4178-303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357, B동 8				
임원	Q 77 HJ	3030영어 외	808호(노밸리)			
임전	윤성민	1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동우	1661-3035	070-4178-303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경기도 용인/	시 기흥구 구성로	.357, B동 8층		
임원	오성훈	3030영어 외	808호(청덕동, 용인테크	노밸리)		
급전	工~8元 	1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동우	1661-3035	070-4178-303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 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 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_	_	-	_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202037	3030영어	2020.01.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1 두성타워 7층	김지완
일부를 인수함	3030키즈	3030키즈	2020.01.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1 두성타워 7층	김지완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_	_	-	_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_	_	-	_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3030영어] 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3030영 어	-
상 호	3030영어 OO러닝센터	_
상표(서비스표)	소타로 함하는 영어학원 삼공삼공 where dreams become reality!	-
광 고	_	_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 없음	_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464,508	139,208	325,300	1,661,019	115,641	110,150
2022년	367,822	181,358	186,464	1,539,534	-152,460	-138,835
2023년	233,860	157,931	75,928	1,775,443	-116,108	-110,535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十七	이듬	연 석기	기간	기간 직위				
	김동우	대표이사	2020.01.01 ~ 현재	(주)3030영어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윤성민	사내이사	2020.01.01 ~ 현재	(주)3030영어 사내이사	경영 업무			
	오성훈	감사	2020.01.01 ~ 현재	(주)3030영어 감사	감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_	-	_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الح الد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의 선구(명 <i>)</i>
2023년 12월 31일	3	_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하였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3030영어	가맹사업 경영	2010. 11 ~ 현재	3030키즈(등록번호:20110100090) 라는 브랜드의 초등 영어전문 학원

^{※ 2020}년01월01일 이전 가맹본부로부터 상기 브랜드 인수함.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의 사용기간)
3030 gol where dreams become reality	외장, 인테리어, 영업표지	출원일 2013.11.19 등록일자: 2014.09.03	출원번호: 4520130006781 등록번호: 4500509820000	김지완	2024.09.03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4년 01월 15일

2. 해당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030영어	3030영어	김지완	2014.01.15 ~ 2019.1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1 두성타 워7층
(주)3030 영어	3030영어	김동우	2020.01.01 ~ 현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357, B동 8 층 808호(청덕동, 용인테크노밸리)

3. 해당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A FA0000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3030영어	교육(외국어)	영어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	1.		2022.12.31			2023.12.31	
\\ \frac{1}{3}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722	722	0	750	750	0	758	758	0
서울	66	66	0	63	63	0	59	59	0
부산	47	47	0	48	48	0	50	50	0
대구	41	41	0	45	45	0	45	45	0
인천	43	43	0	47	47	0	55	55	0
광주	15	15	0	16	16	0	17	17	0
대전	12	12	0	17	17	0	16	16	0
울산	13	13	0	11	11	0	12	12	0
세종	9	9	0	9	9	0	9	9	0
경기	213	213	0	220	220	0	222	222	0
강원	29	29	0	29	29	0	31	31	0
충북	26	26	0	30	30	0	30	30	0
충남	45	45	0	44	44	0	41	41	0
전북	23	23	0	21	21	0	25	25	0
전남	20	20	0	18	18	0	16	16	0
경북	46	46	0	47	47	0	48	48	0
경남	62	62	0	74	74	0	73	73	0
제주	12	12	0	11	11	0	9	9	0

※ 2020년01월01일 이전 가맹본부로부터 당 브랜드 인수함.

5.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771	129	169	9	3	722
2022	722	123	93	2	7	750
2023	750	125	115	2	11	758

^{※ 2020}년01월01일 이전 가맹본부로부터 당 브랜드 인수함.

6. 해당 가맹사업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외에도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

जो. चो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관계			등록번호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3030영어	Where dreams become reality:	20110100090	교육(외 국어)	2/0	2/0	2/0	

^{※ 2020}년01월01일 이전 가맹본부로부터 상기 브랜드 인수함.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 한 곳이 2023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연간 평균	7 매출액		평균 (상한)	연간 매출액	평균 (하한)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758								
서울	59								

부산	50				
대구	45				
인천	55				
광주	17				
대전	16				
울산	12				
세종	9				
경기	222				
강원	31				
충북	30				
충남	41				
전북	25				
전남	16				
경북	48				
경남	73				
제주	9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 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가맹점에 공급하는 물류공급액이 없어 이를 근거로 가맹점 매출을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일)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758	1,370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에서 바로 전 사업년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님	스 r).	入口 カカ	지출 비용(단위: 천원, 니	비고	
구분 수단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경기도 ************************************	(धस्या)	141,399	경기도 ************************************	(비공개)	
판촉	_	_	_	_	_	
합계	-	_	141,399	경기도 ************************************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 가맹금을 별도로 예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프랜차이즈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3030영어	가맹본부
피보험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71.9.5八日八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보험기간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장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 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3,000	계약체결 후 예치	개점 전 계약 해지 (아래 설명 참조)	I .	1. 가입비 2. 개점 컨설팅 3 가맹점운영권부여
총계	3,000	-	_	_	-

* 가맹금의 반환 조건

① 본 계약이 가맹점의 개점 전 종료 또는 해지 시 가맹비 중에서 금 오십만 (500,000)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하여 먼저 공제 하고, 가맹점 개설 준비를 위해 개설 컨설팅 및 노하우 제공 등으로 실제 소요된 실비용을 산정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2) 보증금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3,000	부가세 포함
합계	3,000	_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자율선택	15,000	500	가맹점사업자와 선택한 업체와 개별 협의		30평 기준	
간판, 선팅	자율선택	1,500	_	가맹점사업자와 선택한 업체와 개별 협의		50% 기년	
어학용 책상 및 의자	자율선택	2,000	-	가맹점사업자와 선택한 업체와 개별 협의		30평 25세트	
어학기/헤드셋	자율선택	1,500	_	가맹점사업자와 선택한 업체와 개별 협의		30평 25세트	
초도물품비	가맹본부	1,000	-	입고 7일전	미 공급 시	_	
총계	_	21,000	700	_	_	_	

- ※ 위 표의 금액은 지역, 매장의 형태에 따라 실제 투자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 가맹점 사업을 위한 기기, 집기, 비품구매 등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의 책임으로 가맹점의 점포입지를 선정한다. 가맹본부는 유동인구, 교통량, 입지의 특성, 시장의 특성, 근린시설, 업종 별특성 등의 상황에 따른 점포선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 가맹본부는 점포선정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나,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희망자가 내린다. 따라서 점포선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가맹본부에게 전가할 수 없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을 완료한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종업원	학원 강사 (가맹계약자 고유 권한)	-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형	교육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비용 필요시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선택	현	협의	실시 전	실시 후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 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 의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_	=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점포환경개 선 비용	자율선택	가맹본부 분담비용 을 제외한 나머지	_	_	-	"VII. 가맹본부 의 경영 및 영 업 활 동 등에 대한 지원" 항목 참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 필요시 사전통지와 협의를 거쳐 분담금과 비용을 청구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음(직전사업연도 차액 가맹금 없음, 가맹본부 자체 생산).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학습 관리	학습 현황 파악	수시	영업본부
운영 관리	프로그램 및 학생 관리 등 운영 상태 파악	수시	영업본부
회원수 점검	실제 회원수 / 본사 인지 회원수 통일 여부 파악	수시	영업본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재가맹비	가맹본부	300	계약갱신당일	갱신 전	갱신 후	_

2)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동의 시 양수인은 양수인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비 금 50만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신규 계약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3)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3030영어"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영업표지, 식별 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당사의 상호 및 상표가 표시된 부착물을 귀하의 비용으로 자진 철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종료 후에도 가맹본부의 브랜드 및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

맹본부에게 무단사용일수에 5만원을 곱한 액수를 배상해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파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교재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단위: 원)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 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_	_	-	_	_
A			_	_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_	_	-	-	_	2023년 기준
	계			_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당사가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_	_	-	_	Н	
	계					_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Alphabet Master Series 1~2 Phonics King Series 1~4 Do! Do! Do! English 1~4 Do Dream! English 1~4 Fun! Fun! English 1~4 Speak Up! English 1~4 Five Star! English 1~4 AnySpeak! English 1~4 Super Star English 1~6 Dream in English 1~6 Dream in English 1~6 Acting Star Series 1~6 3030 Vocab Series 1~6 3030 Online IBT 이외 3030영어 전용 프로그램	가매보부가 제시하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상품공급 중단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타 가맹사업자 (영어학원, 영어학습지 등 동종업계 전부) 소속 학생 외의 비회원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 서 공급받은 모든 상품, 용역('가맹 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 한'에 명시된 내역)	공급 및 판매할 수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교재	25,000	홈페이지 공지 및 유선, 팩스 등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 판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 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 니다.

드이쉬 어즈 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3030영어와 동일한 업종(영어교육)	3030키즈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1. 강의실 기준 실 3.3㎡ 당 100세대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2. 최대 3,500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아웃 렛 등)은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비교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 성 → 가맹점사업자에 게 서면 통지 → 가맹 점사업자 동의 → 영	서면 통지후 영업지 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_	_	_	_

※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_	_	_	_
는 국무인 	_	_	_	_
홈쇼핑	_	_	_	-
전화권유판매	_	_	_	_

※ 해당 사항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_	_	_

- ※ 매출액 파악이 불가하여 산정할 수 없으나 오프라인 가맹점만 매출액이 발생함.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_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3030영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갱신계약 시 갱신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킨· 기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⑧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
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
경우
○ 해당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을"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	32조 1항
2. "을"이 "갑"이 공급하지 않은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갑"의 상품인	32조 1항

것처럼 선전, 판매하는 경우	
3. "을"이 "갑"의 서면 동의 없이 가맹점을 휴원 또는 폐원하는 경우	32조 1항
4. "을"이 가맹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2조 1항
5. "을"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2조 1항
6. "을"이 가맹계약서 제9조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32조 1항
7. "을"이 동종영업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2조 1항
8. "을"이 가맹계약서 제12조에 의무조항 위반 등 회원등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현재 회비를 납부하고 3030영어를 학습하고 있는 회원을 휴회로 등록한 경우	32조 1항
9. "을"이 가맹계약서 제15조에 의한 "갑"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32조 1항
10. "을"이 가맹계약서 제18조 제2항의 업무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32조 1항
11. "을"이 가맹계약서 제21조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32조 1항
12. "을"이 가맹계약서 제22조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32조 1항
13. "을"이 가맹계약서 제28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위반한 경우	32조 1항
14. "을"이 가맹계약서 제30조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32조 1항
15. "을"이 가맹계약서 제39조 제2항의 인허가, 등록 및 신고를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32조 1항
16. "을"이 가맹계약서 제40조 제2항의 기한까지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	32조 1항
17.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32조 1항
18. 기타 "을"이 신의칙에 반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2조 1항
19. "을"이 개원 3개월 후부터 매달 평균 교재 사용량이 20패키지 이하로 2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 현저히 판매 부진이 계속 될 경우	32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 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 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 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 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

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ㅇ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 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 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 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 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을 수정 사유 발생 시 사전고지 및 교육 진행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이 경우 양수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교육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으로 체결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모든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78 4	가능	도는 전디의구	→ 1주일 이내 교육 수료	
디기카체기	본부 승인 시	본부가 승인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대리행사	가능	한 권리의무	→ 1주일 이내 교육 수료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존속기간 중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당사와 동일한 업종(영어교육)	경업 불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	주 5일 이상	문의: 관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 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교사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회원변동현황, 월 매출액 등 전반적인 현황	가맹본부 담당자가 유선 및 가맹점 방문시	수시	영업본부	
학습시스템 준수 여부	가맹본부 담당자가 유선 및 가맹점 방문시	수시	영업본부	
표준교재	가맹본부 담당자가 유선 및	수시	영업본부	

사용량 점검	가맹점 방문시			
홍보 진행 상황	가맹본부 담당자가 유선 및 가맹점 방문시	수시	영업본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본 계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파촉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1 正	3 L 78 4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급 결사	P1 44	
	브랜드이미지광 고, 상품광고	50%	50%	광고 계획 공고 →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전체 광고	고 가맹점모집+상품 광고	75%	25%	가맹점부담액 제시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모집광고	100%	_	_	_	
개별 행	사 가맹	가맹점사업자 개별 부담		해당 없음	개별 판촉 행사	

- ※ 전체광고의 경우 각 가맹점사업자 간 비용부담의 배분은 가맹점 사업자의 총 분 담금액을 가맹점사업자의 수로 나눈 비율로 일괄 청구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

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제35조(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갑" 또는 "을"은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본 계약의 다른 사항이 없는 한 그 손해의 정도와 위반의 성격, 상호간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갑"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갑"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이 가맹점 개점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 했을 경우에 "을"은 잔여계약월수에 금 오십만원(500,000)을 곱한 액수를 "갑"에게 위약금의 명목으로 배상한다.
- 3. "을"은 개점 전 계약 해지 시 제17조 1항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한다. 이 경우 위약금은 제7조 1항에 따라 "을"이 "갑"에게 지급한 가맹비에서 공제한다.
- 4. "을"의 귀책사유로 개점 후 계약 해지 시 잔여개월 수에 금 50만원을 곱한 금 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34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 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제34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를 위반할 경우 무단사용일수에 5만원을 곱한 액수를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30평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_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사업내용 상담	즉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계약체결 14일전	
시장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시장분석 및 개점 컨설팅	1~3일	10 ~11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10p~11p 참조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D-30	
가맹금 예치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 영업에 필요한 설비 구비	10~15일	
초도물품 제공	- 초도물품 발송	D-10~8(3일)	
교육 실시	- 운영교육 실시	D-3~1(2일)	
가맹점 오픈	- 오픈 및 운영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 내부 자율 분쟁 협의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변호사, 가맹거래사로 구성된 외부 전문 업체 (가맹분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cmc.kr)의 자문을 통하여 분쟁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안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빵업의 통일성을 유자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라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알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포 환 경 개 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비한 기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의 함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에서분할지급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에서분할지급 가맹본부 가맹점사 업자간 별도의 함의가 있는 기생한 지정한 지장한 이 가맹본부 가망본 가망본부가 등 종하여 전에 날리 의 가맹본부 가당한 지정한 점 포환 경기에 날리 이 가맹본부 가당한 지정한 점 포환 경기에 날리 이 가맹본부 가당한 이 나이 의 가맹본부 다음 또한 지정한 이 나이 의 가맹본부 다음 또한 지정한 이 나이 의 가맹본부 다음 또한 지정한 이 나이 이 가맹본부 다음 또한 지정한 이 나이 의 가맹본부 이 의 가맹본부 다음 지정한 기생년부 이 의 가맹본부 다음 지정한 기생년부 이 가맹본부 다음 지정한 기생년부 이 가맹본부 다음 지정한 이 나이 의 가맹본부 이 의 가맹본부 다음 지정한 이 나이 의 가맹본부 다음 지정한 이 나이 의 가맹본부 다음 지정한 이 나이 이 가맹본부 다음 지정한 이 나이 이 가맹본부 이 의 의 가맹본부 이 의 가맹본부 이 의 가맹본부 이 나이 의 가맹본부 이 의 가맹본부 이 나이 의 가맹본부 이 나이 의 가맹본부 이 나이 의 가맹본부 이 나이 의 가맹본부 이 나이 의 가망본 이 나이 의 가망본부 이 나이 의 가망본 이 의 가망본 이 이 나이 의 가망본 이 가망본 이 나이 의 가망본 이 나이 의 가망본 이 나이 의 가망본 이 나이 의 가망본 이 나이 의 가망본 이 나이 의 가망본 이 나이 이 나이 의 가망본 이 나이 이 나이 의 가망본 이 나이 이 나이 이 나이 이 나이 이 나이 이 나이 이 나이 이 나	 가맹사업 거래의 공 전화에 반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 외사유 당시 	○ 영일 터이가 부 책 는 로 이 (계 해 업 포 는 우 맹 부 중 여 에 례포 개 로 3년 에 본 의 없 사 계 종 약 양 당 되 경 가 부 액 잔 간 비 는환 선부년에 본의 없 유 약 료 의 영 도 되 경 가 부 액 잔 간 비 는환 선 기 등 한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분할지급 시 절차〉 ○ 가 맹 점 사업 자 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부담액 은 자 아 이 지 한 이 지 한 수 등 가 는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관리팀
가맹점사업자	상품, 설비(집기),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가맹점부담	문의: 관리팀

요청 시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런,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요청 시 별도 협의)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3030영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과정	운영 방법, 프로그램 안내	강의 및 토론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수시교육과정	운영 방법, 프로그램 안내	강의 및 토론	비정기교육	선택 교육
보충교육과정	운영 방법, 프로그램 안내	강의 및 토론	비정기교육	선택 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3030영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신규교육과정	2일	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교육과정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선택 교육
보충교육과정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선택 교육
양수자교육	2일	500	가맹점 양수자 대상

3. 교육·훈련의 주체

신규교육과정은 가맹계약을 맺는 원장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에 근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_	_	_
2	_	_	_
3	-	_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_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_	_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1661-303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77で10~	¶시신(3^1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상호명(영업표지)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 ,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급		원 정)
신청인의	의 계좌					
가맹본	부의 계좌					
	맹사업거래의 공정 제2항에 따라 위의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ठॅ}-				
지점장		o _l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에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공일: 20 년 월 일

■ 가맹희망자 보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이메일)			
⑥ 수령확인문구	기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기맹점현황문서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frac{c}{c}$ 경 하 $\frac{c}{c}$)			
	※ " <u>수령하였음</u> "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	제공	담당지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sim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14.02

■ 가맹본부 보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이메일)				
⑥ 수령확인문구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 , , , ,		가맹점현황문서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i>수 령 하 였 음</i>)				
	※ " <u>수령하였음</u> "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14.02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5 초도물품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